

**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
관 리 규 정**

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1항제4호 중 “1년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